

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5. . .
발 의 자	김영태 의원

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영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5. . .

발 의 자: 김영태 의원(1인)

찬 성 자: 김영길 · 김재우 · 김정도 · 김춘남
박세채 · 신용하 · 안주찬 · 이정희
추은희 의원(9인)

1. 제안이유

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기준을 명문화하고 공공청사별 부설주차장의 특성에 맞는 주차장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행사 등 공영주차장 무료개방(안 제4조의3)

나.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(안 제17조제4항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나. 부서검토: 교통정책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라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“공공청사”란 구미시청과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.

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조의3(행사 등 공영주차장 무료개방) ① 전국단위 행사·축제 및 시 주요 행사 등에 대해 행사주체가 서면으로 요청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행사구역 내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.
- ② 설·추석 명절 등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.

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3조제7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·운영, 주차요금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3. (생략)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가. ~ 하. (생략)

거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
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5. ~ 7. (생략)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 : 교통정책과

조 례 명

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 사항

- 근거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주요 사항

- 행사 등 공영주차장 무료개방(안 제4조의3)
-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(안 제17조제4항)

검토 결과

-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기준을 명문화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
- 공공청사의 특성에 적합한 부설주차장 운영 기대

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

- 기대효과 :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
- 소요예산 : 해당없음
 - *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문 제 점 : 해당없음

[별지 제1호서식]

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본 조례는 재정수반 요인은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재정수반 요인 없음

4. 작성자

-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 김선혁(☎480-6262)